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시행 2022. 12. 1.] [소방청공고 제2022-208호, 2022. 12. 1., 제정]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시행 2022. 12. 1.] [소방청공고 제2022-208호, 2022. 12. 1., 제정]

국립소방연구원(소방정책연구실), 041-559-0581

- 1. 일반사항
- 1.1 적용범위
-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 1.2 기준의 효력
-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1.2.2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1.3 기준의 시행
- 1.3.1 이 기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4 기준의 특례
- 1.4.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의 상황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로도 이기준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할 소화기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효력 범위 안에서 그 유사한 소방시설을 이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로 보고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1.5 경과조치
- 1.5.1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른다.
- 1.5.2 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 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 1.6 다른 법령과의 관계
- 1.6.1 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1.7 용어의 정의
- 1.7.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7.1.1 "소화약제"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액체 및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
- 1.7.1.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다음의 소화기를 말한다.

- (1) "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 (2) "대형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 1.7.1.3 "자동확산소화기"란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 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 1.7.1.4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법 제37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유효설치 범위(설계방호체적, 최대설치높이, 방호면적 등을 말한다)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소화장치를 말한다.
-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캐비닛 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 (4) "가스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 (5) "분말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분말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 (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에어로졸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 1.7.1.5 "거실"이란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 1.7.1.6 "능력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된수치를 말하며,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표 1.7.1.6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표 1.7.1.6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능력단위		
1. 마른모래	삽을 상비한 50 L (이상의 것 1포	0.5. [19]
2. 팽창질석 또는 팽칭	진주암 삽을 상비한 80 L (이상의 것 1포	0.5 단위

- 1.7.1.7 "일반화재(A급 화재)"란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를 말한다. 일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로 표시한다.
- 1.7.1.8 "유류화재(B급 화재)"란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료, 솔벤트, 래커,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와 같은 유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를 말한다. 유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로 표시한다.
- 1.7.1.9 "전기화재(C급 화재)"란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를 말한다. 전기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로 표시한다.
- 1.7.1.10 "주방화재(K급 화재)"란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주방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로 표시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2. 기술기준

- 2.1 설치기준
- 2.1.1 소화기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1.1.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표 2.1.1.1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

표 2.1.1.1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

√소화약제 구분	가스		분말			액체			기타				
\	이산	할론	할로	인산	중탄	산알	강화	포소	울 •	고체	마른	팽창	ュ
\	화탄	소화	겐화	염류	산염	칼리	액소	화약	침윤	에어	모래	질석	밖의
	소소	약제	합물	소화	류소	소화	화약	제	소화	로졸		• 팽	것
	화약		및	약제	화약	약제	제		약제	화합		창진	
\	제		불활		제					물		주암	
\			성기										
\			체소										
\			화약										
적응대상 \			제										
일반화재	_	0	0	0	_	0	0	0	0			0	_
(A급 화재)	_	0		0				0					
유류화재	0	0		0	0	0	0	0	0	0	0	0	_
(B급 화재)													
전기화재	0	0		0	0	*		*	*		_		
(C급 화재)								*	*				_
주방화재					*			*	*				
(K급 화재)				_	*		*	*	*				*
[HI 77] "+" OI	人名[0]	TII HH	저오시	4.0	「人바	LI Ad	선취	אק ום	וואוכ	フレ会に	버 🕾 .	TII 2	7 T (II)

[비고] "*"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화재 종류별 적응성에 적합한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2.1.1.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른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표 2.1.1.2의 기준에 따를 것

표 2.1.1.2 특정소방대상물 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1. 위락시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30 ㎡ 마다 능력단위 1단위
1. 커ട/\ভ	이상
2.공연장·집회장·관람장·문화재·장례식장 및 의료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 ㎡ 마다 능력단위 1단위
시설	이상
3.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노유	
자시설 • 전시장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 ㎡ 마다 능력단위 1단위
공장·창고시설·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및 관광	이상
휴게시설	
4 T H201 24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00 ㎡ 마다 능력단위 1단
4. 그 밖의 것	위 이상
THIND LATINOUS HACKOUS MARKOU OLOUU DIACO	O TOTTUN DISTINCT HE OF BUTTON ALTHOU

[비고]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위 표의 바닥면적의 2배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으로 한다.

2.1.1.3 2.1.1.2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표 2.1.1.3에 따라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2.1.1.3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용도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1. 다음 각목의 시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	1.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 ㎡마다 능력단위 1				
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성	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고, 그 외에 자동확산소				
경우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범치하지 않을 수 있다.	화기를 바닥면적 10 m' 이하는 1개, 10 m' 초과				
가. 보일러실(아파트의 경우		는 2개를 설치할 것				
조실 • 세탁소 • 대량화기취급						
		. 중 텔 : 기	2. 나목의 주방의 경우, 1호에 의하여 설치하는			
			소화기 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			
설·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 00				
다.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N OI HU				
전반실(불연재료로된 상자 9		,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 ㎡마다 적응성이 있는			
	있는 장소. 나만, 세1오 나	국의 8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유효설치방호체적 이내			
소를 제외한다.			의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캐			
			비닛형자동소화장치(다만, 통신기기실・전자기기			
		실을 제외한 장소에 있어서는 교류 600 V 또는				
		직류 750 V 이상의 것에 한한다)				
		능력단위 2단위 이상 또는 유효설치방호체적 이				
/5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	범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내의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	리에 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	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에서 정	병 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배 이상마다			
표 2에 따른 특수가연물을	하는 수량 이상		능력단위 1단위 이상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	리에 관	대형소화기 1개 이상			
	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에서 정				
	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					
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 기타 가연성	성가스를	각 연소기로부터 보행거리 10 m 이내에 능력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연료로 사용하는 연소기:	기가 있	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 다만, 상업용			
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	는 장소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는 제외한다.			
스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가	액화석유가스 기타 가연성	성가스를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및 대			
연성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저장하	형소화기 1개 이상			
장소	는 저장실(저장량 300 kg	미만은				
	제외한다)					
6. 「고압가스안전 저 장 하	200 kg 미만 저장하는 장	}소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관리법」 • 「액화석 고 있는						
유가스의 안전관리 양 또는	제조 • 사용	하는 장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소					
「도시가스사업법」 동안 제	200 kg 이상 저장하는 징	소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에서 규정하는 가연 조 • 사	300 kg 미만 제품 110		비타면제 50 까마다 느꼈다이 5단이 이사이 시			
성가스를 제조하거 용하는	1 1.	ort g	바닥면적 50 m'마다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			
	소	화기 1개 이상				
용도병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용도벌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나 연료외의 용도로	양	300 ㎏ 이상	저장하는 장소	대형소화기 2개 이상		
저장ㆍ사용하는 장			제조・사용하는 장	바다면적 50 m' 마다 능력단위 5단위 이상의 소		
소			소	화기 1개 이상		

[비고] 액화석유가스·기타 가연성가스를 제조하거나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장소에 소화기를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 장소 바닥면적 50 ㎡ 이하인 경우에도 해당 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2.1.1.4 소화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1.1.4.1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m²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 2.1.1.4.2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 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 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다.
- 2.1.1.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 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1.1.6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 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다만, 소화기 및 투척용소화용구의 표지는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축광식표지로 설치하고, 주차장의 경우 표지를 바닥으로부터 1.5 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 2.1.1.7 자동확산소화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2.1.1.7.1 방호대상물에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출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2.1.1.7.2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 2.1.2 자동소화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2.1.2.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2.1.2.1.1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 2.1.2.1.2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 2.1.2.1.3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 2.1.2.1.4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30 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30 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2.1.2.1.5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2.1.2.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2.1.2.2.1 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별로 성능인증을 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2.1.2.2.2 감지부는 성능인증을 받은 유효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 2.1.2.2.3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 2.1.2.2.4 후드에 설치되는 분사헤드는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소화약제의 방출 방향 및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 2.1.2.2.5 덕트에 설치되는 분사헤드는 성능인증을 받은 길이 이내로 설치할 것
- 2.1.2.3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2.1.2.3.1 분사헤드(방출구)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소화 약제를 방출시킬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할 것
- 2.1.2.3.2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 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 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2.4(감지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 2.1.2.3.3 방호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 2.1.2.3.4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 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1 단서의 각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1.2.3.5 교차회로 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4.3.5, 2.4.3.8 및 2.4.3.10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 2.1.2.3.6 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소화약제가 방출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가스압에 의하여 폐쇄되는 것은 소화약제 방출과 동시에 폐쇄할 수 있다.
- 2.1.2.3.7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할 것
- 2.1.2.3.8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 2.1.2.4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2.1.2.4.1 소화약제 방출구는 형식승인을 받은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할 것
- 2.1.2.4.2 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 내에 형식승인 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연동방식으로서 하나의 형식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제품으로 본다.
- 2.1.2.4.3 감지부는 형식승인 된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해야 하며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 2.1.2.4.3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열감지선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최고주위온도범위 내에 설치해야 한다.
- 표 2.1.2.4.3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른 감지부의 표시온도

설치장소의 최고주위온도	표시온도			
39 ℃ 미만	79 ℃ 미만			
39 ℃ 이상 64 ℃ 미만	79 ℃ 이상 121 ℃ 미만			
64 ℃ 이상 106 ℃ 미만	121 ℃ 이상 162 ℃ 미만			
106 ℃ 이상	162 ℃ 이상			

- 2.1.2.4.4 2.1.2.4.3에도 불구하고 화재감지기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1.2.3의 2.1.2.3.2부터 2.1.2.3.5까지의 설치방법에 따를 것
- 2.1.3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을 방출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m²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2.2 소화기의 감소
- 2.2.1 소형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2.1.1.2 및 2.1.1.3에 따른 소형소화기의 3분의 2(대형소화기를 둔 경우에는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층수가 11층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은 그렇지 않다.
- 2.2.1 대형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 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